

책된다. 예를 들어 국회의 의사를 중계방송하는 경우, 면책특권을 갖는 의원의 국회발언 내용이 명예훼손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보도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된 판례가 보이지는 않지만 국회의원의 발언을 사실 확인없이 중계보도하면서 객관보도라는 논리로 채색하는 우리나라 언론의 관행을 비판하는 주장(류한호, 2001)을 감안할 때 법원의 다양한 해석이 필요한 개념이라고 하겠다.

3. 명예훼손 면책요건의 한계

(1) 보도목적에 있어서의 고의성 혹은 악의(actual malice)

보도내용이 비방 등 명예훼손이 목적이거나 동기일 경우에는 의견이나 논평의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는다. 이는 보도가 공익성을 결여하였기 때문이다.

(2) 보도내용의 허위성

보도내용이 진실할 경우 면책이 된다. 그러나 허위의 사실에 의한 보도일 경우 면책되지 않는다.

(3) 취재의 불성실성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면책이 인정된다. 그러나 면책의 인정여부에는 진실한 보도를 위해 언론이 얼마나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는가가 관건이 된다.

4) 책임회피적 보도태도

머릿글자(initial)만을 표기하였거나, 명예훼손의 내용이 불명확하였거나, 우회적이고 간접적으로 서술되었거나, 의견이나 논평의 형태를 띠더라도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명예훼손의 내용이 불명확하게 서술되었더라도 정황에 따라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다.

(5) 사적 사항에 대한 보도

공인이든 사인이든 사적 사항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은 면책되지 않는다. 따라서 범죄보도에 있어서도 범죄자의 신상보도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단, 공인이 갖는 정치사회적 비중이 매우 클 경우 면책이 고려될 수 있다.

(6) 상계를 벗어나는 보도태도와 비상식적 내용의 보도

비평이나 논평의 경우 거친 언사가 허용되지만 모멸적 언사를 사용할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일반인의 상식에 벗어나는 내용을 보도할 경우에는 진실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7) 불확실한 내용에 대한 단정적 보도

예를 들어 범죄보도에 있어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서 “...혐의를 받고 있다.”와 같은 표현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전체 맥락 등을 감안하여 불확실한 내용을 근거없이 단

정적으로 보도하였을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

(8) 불확실한 정보에 근거한 보도

확인되지 않은 풍문이나 추측에 근거한 보도는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계당국의 피의사실 공표도 공식적인 발표에 근거한 것이 아니면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